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 총사업비관리제도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

Welcome to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PIMAC) at the KDI, a gatekeeper to public procurement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 1. 개요

## 1 총사업비관리제도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민관기간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으로 규정함.

## 2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재조사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 제2항 및 제49조의 1에 의거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와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4 수요예측재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4조에 의거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수요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5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8조에 의거 공사 착공 이후에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사업의 설계변경 항목에 대한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 규모 검토를 통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대상사업

### 1 총사업비관리제도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 2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관리 대상과 동일하며,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및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행함.

###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중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2에 해당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4 수요예측재조사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중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행함.

### 5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 건축사업 및 정보화사업인 경우로서 공사착공 이후에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설계변경의 타당성,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함.

### 3. 면제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에 의거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

## 4. 선정 및 수행체계

### 1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에 의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함.

적정 총사업비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여부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개별사업마다 수시로 본 기관에 수행을 요청하고 있음.

### 2 간이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9조의 1에 의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 간이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이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함.

적성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인 대안에 대한 판단을 위해 개별사업마다 수시로 본 기관에 수행을 요청하고 있음.

### 3 수요예측재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8조에 의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 수요예측재조사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수요예측재조사 시행을 요구하여야 함.

적정 수요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개별사업마다 수시로 본 기관에 수행을 요청하고 있음.

### 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8조에 의거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이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토해양부,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개별사업마다 수시로 본 기관에 수행을 요청하고 있음.

## 5. 분석내용

### 1 타당성재조사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5조에 의거 타당성재조사 시행시 따라야 할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표준지침'을 제정·운영함.

타당성재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으로 구성되며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함.

### 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타당성재조사 수행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3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수행 방식에 준하여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수행함.

### 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6. 수행현황

1999~2016년까지 총 653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됨.

부문별로는 도로부문 및 철도부문 사업이 각각 229건 및 117건으로 그간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반 이상(약 53%)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범위 확대에 따라 건축 사업을 포함한 기타 비정형 사업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 [총사업비관리 연도별, 분야별 수행 실적]

(단위: 건)

연도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건축	수자원(댐)	기타	합계
2003	3	-	-	3	-	-	6
2004	2	1	-	2	-	1	6
2005	6	-	-	3	-	-	9
2006	10	-	-	2	5	2	19
2007	9	2	2	1	-	-	14
2008	10	1	2	6	2	-	21
2009	25	-	2	1	2	1	31
2010	17	3	-	5	4	2	31
2011	12	-	-	2	-	1	15
2012	6	1	1	2	1	-	11
2013	3	1	2	3	-	-	9
2014	16	-	2	-	-	-	18
2015	6	1	-	3	-	-	10
2016	7	1	1	1	-	1	11
계	132	11	12	34	14	8	211

- \* 주: 1) 2016년 12월말까지 조사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함.  
 2) 기타부문에는 정보화, R&D 부문 사업 등의 건수가 포함됨.  
 3)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는 수행 실적에서 제외함.